

의안 번호	1130
----------	------

중구 A-04(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연월일 : 2015. 3. 04.(수)
-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회부 : 2015. 3. 06.(금)
- 라. 위원회심사 : 2015. 3. 12.(목)

## 2.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 10월 현지개발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산전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점개발용지 사업시행예정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 참여가 불가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신설·변경 하고자
- 중구 A-04(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비계획변경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력개발용지로 변경
- 나.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변경  
도로신설 L=161m, B=6m 및 주차장신설 A=547m<sup>2</sup>

### 다. 정비기반시설 현황

시설명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도 로	신설	동동 121번지 일원		966	966	
주차장	변경	동동 150번지 일원	687	감) 192	495	
주차장	신설	동동 118-1번지 일원		547	547	

### 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 5.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 10월 추진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산전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 예정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력개발용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력개발용지로 변경할 경우 차이점과
  - 도로 및 주차장 신설과 주차장 면적 변경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